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7
----------	-------

발의년월일 : 2014. 2. 19.

발 의 자 : 김수진·장영숙·강성국
김순금·서종수·오진아
유동균·이필레·조남진
의원(9명)

1. 제안이유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서 규정한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명시하고,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은 “3년”을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함(안 제5조제5항)

나. 사회복지시설 현황 정비(안 별표)

- 5번란 주관과 변경 : 복지행정과 → 가정복지과

- 9번란 시설명 변경 : 장애인주간보호센터 →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 15번란 신설 : 독거노인복지센터 추가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불필요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4. 2. 20 ~ 2. 25(제출된 의견 없음)

나.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한다.

제2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을 “제1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로,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을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3년으로 한다”를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로, “1회”를 “한 차례”로, “해당시설”을 “해당 시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장부”를 “장부 및”으로 한다.

제10조 중 “구청장은 수탁자가”를 “구청장은”으로, “원상회복 등”을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으로 한다.

별표 5번란 중 “복지행정과”를 “가정복지과”로 하고, 9번란 중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44길 30-7(상암동)”을 “30길 9-22(성산동)으로 하며, 15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주관과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15	사 회 복지과	독거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46, 402호(동교동)	노인돌봄 서비스제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제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 ----- -----</p>
<p>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 ----- ----- -----</p>
<p>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다.</p> <p>④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그 위원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p>	<p>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p> <p>④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p>

⑤ 시설의 위탁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수탁자가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③(생략)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0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

⑤ ----- 5년 이내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선정위원회 ----- 한 차례-----

----- 해당 시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③(현행과 같음)

④ ----- 따른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지도·감독) ① -----

----- 장부 및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

-----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번	주관과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5	복 지 행정과	영유아통합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신공덕동)	영유아가족 지원
9	사 회 복지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4길 30-7 (삼암동)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신 설>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번	주관과	시설명	위 치	주요기능
5	가 점 복지과	영유아통합 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27(신공덕동)	영유아가족 지원
9	사 회 복지과	마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0길 9-22 (삼산동)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5	사 회 복지과	독거노인 복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46, 402호 (동교동)	노인돌봄 서비스제공